

# 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7월)

### 1. 축산물 및 가금육 제품 수출시 검역증 구비 조건에 주의

-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육류 및 가금류와 이들 가공제품의 일본 수입통관시 한국내 검역기관에서 발행된 위생증명서(동물검역증)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산 스팸제품에서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한 바 있어 주의가 필요함

#### 1) 위생증명서가 필요한 식육 및 식육제품

- 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와 내장 및 이들 제품(식육제품)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위생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식품 판매용으로 수입해서는 안됨

가) 가축 : 소, 말, 돼지, 면양, 염소 (도축장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것), 물소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7조에 규정된 것)

나) 가금 : 닭, 오리, 칠면조 (식조 처리사업 규제 및 식조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

다) 식육 제품 : 식육제품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8조에 규정된 것)

☞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 및 장기로 만들어진 제품을 말함

☞ 제품 유형 :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로스트치킨, 훈제 소고기, 콘드비프, 육류가 50%이상 포함된 햄버그, 고기완자, 파테, 데린 등

#### 2)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 식품위생법 제9조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해진 사항은 다음과 같음

가) 가축 및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 해당 가축 또는 가금의 종류, 전조에서 규정하는 제품 (식육제품)의 경우 그 명칭 및 원재

료의 고기 또는 내장 종류

나) 해당 수출제품의 수량 및 중량

다) 수출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소재지)

라) 수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소재지)

마)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 검사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등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

a. 가축의 경우 도축 검사 (도살 전에 실시하는 생체검사, 해체 전에 실시하는 검사 및 해체 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함.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도축검사를 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

b. 가금류의 경우 식조 검사 (생체검사, 날개 제거후 검사 및 내장 적출 후의 검사를 말함. 이하 동일)를 실시한 기관의 명칭 또는 식조 검사를 한 직원의 관직 및 성명

바) 다음에 열거하는 도살 등이 실시된 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a. 가축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해체가 이루어진 도축장

b.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에 있어서는 도살, 날개 제거 및 내장 적출이 실시된 식조 처리장

c.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육의 경우 해당 처리가 실시된 시설

d. 전조에 규정하는 제품(식육제품)에 있어서는 당해제품이 제조된 제조소

사) 전호 기호 a부터 d까지 규정된 도살, 해체, 날개 제거, 내장 적출,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 또는 제조가 일본과 동등 이상의 기준에 근거하여 위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

아) 다음에 열거하는 도살 등이 실시된 연월

a. 가축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

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도축검사

- b. 가금류의 고기 및 내장(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제외)의 경우 도살 및 식조 검사
- c. 분할, 잘게 자르는 등의 처리가 이루어진 가축 또는 가금류의 고기 또는 내장의 경우 해당 처리 내용
- d. 전조에 규정된 제품(식육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내용

### 3) 증명서 접수가 가능한 국가 및 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인도(가금류에 한함), 인도네시아 (가금류에 한함), 바누아투, 베트남 (가금류에 한함),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영국, 에콰도르, 호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크로아티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가금류에 한함) ,산 마리노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에서 도축 처리 된 돼지고기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싱가포르 (돼지고기, 닭고기 및 오리 고기에 한함),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돼지고기에 한함), 태국, **대한민국**, 대만, 체코 (돼지고기에 한함), 칠레, 중국, 덴마크, 독일, 터키 (가금류에 한함), 니카라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헝가리, 필리핀, 핀란드, 브라질, 프랑스, 불가리아 (가금류에 한함), 페루 (가금류에 한함), 벨기에, 폴란드, 포르투갈, 온두라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러시아 (2019년 10월 4일 현재)

### 4) 수출국 이외에서 도축 또는 식조검사가 실시된 것

- 식품 위생법 제9조 제2항의 증명서가 수출국 이외의 국가에서 도축 검사가 실시된 가축의 고기와 내장 또는 식조 검사가 실시된 가금류의 고기와 장기에 관한 것일 경우 해당 도축 검사 또는 식조 검사를 실시한 국가의 정부 기관이 발행한 전조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 사본도 증명서에 같이 첨부 해야 한다.
- 수출국(B국가) 이외의 제3국(A국가)에서 도축검사 또는 식조 검사가

실시된 원료를 수입하여 사용된 경우, 제3국(A국가)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B국가를 전제로 한 기재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본을 대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부족한 경우가 많음

- 따라서 부족한 정보를 수출국 정부 기관에서 별도 발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시 되며, 수출국(B국)에서의 위생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에는 반드시 원료수입국(A국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번호를 기재하여 추적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참고 : 서류 제출 이미지>



※ 자료원 : 일본 오사카 검역소 사이트

<https://www.forth.go.jp/keneki/osaka/syokuhin-kanshi/todokedetetuduki3.html#fugu>

## □ 시사점

- 스팸류 등 육류 멸균제품을 수출시 위생증명서(동물검역증)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한국내 제조단계에서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입회하여 검역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신청 조치가 필요함

- 수출제품에 대한 검역요건은 제품별로 상이함으로 반드시 수입업체를 통해 일본 검역당국에 확인함으로써 수입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II

##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7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52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의 위반사례는 신선들깨잎에서 잔류농약 위반 2건, 활바지락에서 설사성 패독검출 등 3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18건(34.6%), 냉동식품 등의 대장균군 검출로 인한 위생위반이 15건(28.8), 첨가물 위반이 7건(13.5), 블루베리 잼 등에서 방사선물질 검출 등의 기타 위반사례가 2건(3.8), 쌀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0건(19.2) 등으로 나타남

###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4건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각국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율중 26.9%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8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3건, 아플라톡신 1건, 첨가물 위반 2건이 발생함
- 중국산 냉동감자에서 잔류농약인 할록시포프(Haloxypop)가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한 0.02ppm이 연속 검출되어 잔류농약 위반으로 인한

명령검사조치가 발동됨으로서 향후 중국산 감자는 매 수입시마다 잔류농약 검사를 받아야만 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 중국산 감자 수입량(2019년) : 11,098톤/수입건수 1,269건

- 팔에서 잔류농약인 아세트크롤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하여 0.02ppm이 검출되는 잔류농약 위반사례가 2건 발생함
- 기타, 냉동수산물인 오징어 및 그라탱에서 대장균류가 검출된 위반사례가 발생함

####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미국산은 땅콩, 아몬드 등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위반이 5건 발생하였으며, 쌀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위생위반이 1건 발생함

####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냉동 연어 등 수산물에서 E.coil 양성의 위생위반이 2건 발생하였으며, 신선 자소초에서 잔류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 위반됨. 기타 KRILL PASTE제품에서 지정외 첨가물 사용으로 인한 위반등 계 5건의 위반이 발생함

####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신선들깨잎에서 잔류농약인 파클로브트라졸이 기준치인 0.01ppm을 초과한 0.18 및 0.05ppm이 검출되는 복수위반으로 인해 7.31자로 전수검사가 발동됨
- 향후 한국산 들깨잎 매수입시마다 지정검사기관에서 잔류농약 파클로브트라졸 성분을 검사후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통관이 허가됨
- 활바지락에서 설사성 패독이 기준치인 0.16mgOA/kg 을 초과한 0.26mgOA/kg이 검출되어 위반사례가 발생함

#### ○ 기타국가 위반사례

- 타이의 경우 냉동수산물에서 2건의 대장균군 양성 위반이 발생함
- 프랑스의 경우 블루베리잼 및 버섯류에서 방사선물질 초과검출이 각각 발생하였으며, 건조무화과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됨
- 대만의 경우 현미에서 곰팡이 검출로 인한 위반사례가 1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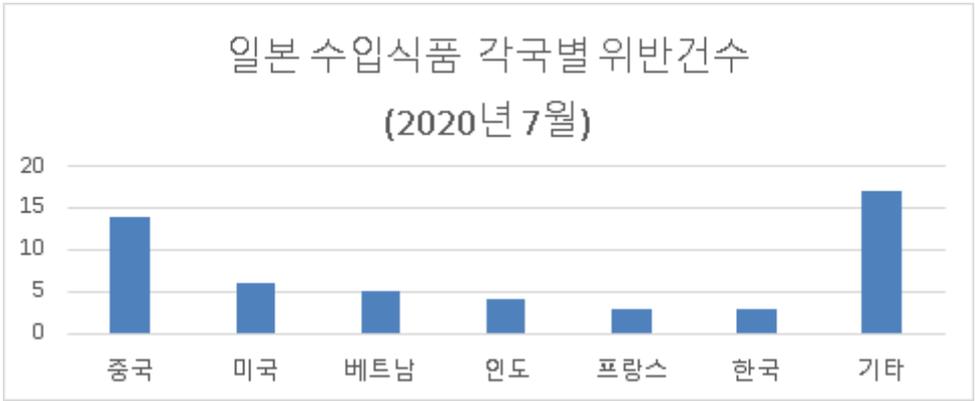
### 3. 한국산 이매패 수산물 전수검사 발동

-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수산물인 이매패 조개류(바지락, 피조개 등)에 대한 설사성 패독 검출 위반으로 인해 8. 4일자로 한국산 이매패에 대한 설사성 패독 성분에 대해 전수검사 조치가 발동됨
- 현재, 한국산 이매패의 경우 패독 성분에 대해 전수검사 상태로서 지자체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시 해당 명령검사가 면제조치 되어왔으나, 향후 동 조건을 삭제하여, 한국산 이매패(바지락, 피조개 등) 수입시에는 매 수입시 마다 설사성 패독 성분 검사를 받고 이상 없을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수검사 조치가 발동함
  - 검사결과 설사성 패독 성분 기준치인 0.16mgOA/kg 이내여야 함
- 8. 4일 명령검사 발동 이후 한국산 바지락 및 피조개에서 설사성 패독으로 인한 위반수가 각3건씩 계6건이 발생함

#### □ 시사점

- 한국산 이매패에 적용하는 패독 명령검사는 마비성 및 설사성 패독의 2개 성분이 있으며, 이번에 전수검사 명령검사가 발동된 것은 설사성 패독 성분임
- 패독은 하절기 수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기 쉬워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역 감시를 통한 규제대상 해역에서 채취된 제품을 수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시 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표2> 국가별 식품 위반 내역 상세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잔류농약 및 항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첨가물	기타
중국	14	26.9	8	1	3	2	
미국	6	11.5		5	1		
베트남	5	9.6	2		2	1	
인도	4	7.7	2	1	1		
프랑스	3	5.8		1			2
한국	3	5.8	2		1		
기타국가	17	32.7	4	2	7	4	
합 계	52	100.0	18	10	15	7	2
비율(%)			34.6	19.2	28.8	13.5	3.8

III

**FTA 이행 이슈 관련**

(해당 없음)